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
----------	----

제출년월일 : '95. 12.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재정확충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소득할주민세를 조정하여 조달하고, 한미자동차협상중 대형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인하협상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공포되므로서 지방세법개정내용에 따라 대전광역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개월이내로 연장하고자 함 (안 제20조)
- 나.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함 (안 제26조제1항)
- 다. 지방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7.5%에서 10%로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상의 세율도 이에 맞추어 10%로 하되, 동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안 제26조 제2항)
- 라. 지방세법상 2,500cc초과 3,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세율이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cc초과의 승용자동차 세율이 630원에서 370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상의 세율도 이에 맞추어 개정함 (안 제2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대전광역시세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1.개 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28조제1항제1호 표의 비영업용란의 씨씨당 세액란중 “410원”을 “310원”으로 하고, “630원”을 “370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되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취득신고 및 신고납부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1~14. (생략)</p> <p>제26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개인 : 3,000원</p> <p>2. (생략)</p> <p>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p>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frac{100}{100}$분의 7.5</p> <p>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frac{100}{100}$분의 7.5</p> <p>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frac{100}{100}$분의 7.5</p> <p>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p> <p>1. 승용자동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2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1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cc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630 원</td> </tr> </tbody> </table>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생략)	800cc 이하	100 원	1,000cc 이하	120 원	1,500cc 이하	160 원	2,000cc 이하	220 원	2,500cc 이하	250 원	3,000cc 이하	410 원	3,000cc 초과	630 원	<p>제20조(취득신고 및 신고납부등) ①----- -----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 ----- ----- ----- 1~14. (현행과 같음)</p> <p>제26조(세율) ①----- -----</p> <p>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p> <p>2. (현행과 같음)</p> <p>②-----</p> <p>1. ----- $\frac{100}{100}$분의 10</p> <p>2. ----- $\frac{100}{100}$분의 10</p> <p>3. ----- $\frac{100}{100}$분의 10</p> <p>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p> <p>1. 승용자동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1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70 원</td> </tr> </tbody> </table>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현행과 같음)	-----	-----	-----	-----	-----	-----	-----	-----	-----	-----	-----	310 원	-----	370 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생략)	800cc 이하	100 원																																							
	1,000cc 이하	120 원																																							
	1,500cc 이하	160 원																																							
	2,000cc 이하	220 원																																							
	2,500cc 이하	250 원																																							
	3,000cc 이하	410 원																																							
	3,000cc 초과	630 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현행과 같음)	-----	-----																																							
	-----	-----																																							
	-----	-----																																							
	-----	-----																																							
	-----	-----																																							
	-----	310 원																																							
	-----	370 원																																							

지 방 세 법 증 개 정 법 률 안

현 행	개 정 안																																																		
<p>제120조(신고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생략)</p> <p>제176조(세율) ①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개인</p> <p style="margin-left: 20px;"><신설> (표 : 생략) <신설></p> <p>2. (생략)</p> <p>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소득세할</td> <td>소득세액의 100분의 7.5</td> </tr> <tr> <td>법인세할</td> <td>법인세액의 100분의 7.5</td> </tr> <tr> <td>농지세할</td> <td>농지세액의 100분의 7.5</td> </tr> </tbody> </table> <p>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p> <p>1. 승용자동차</p> <p style="margin-left: 20px;">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영 업 용</th> <th colspan="2" style="width: 80%;">비 영 업 용</th> </tr> <tr> <th style="width: 40%;">배 기 량</th> <th style="width: 40%;">씨씨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2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10 원</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cc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630 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세액	(생략)	800cc 이하	100 원	1,000cc 이하	120 원	1,500cc 이하	160 원	2,000cc 이하	220 원	2,500cc 이하	250 원	3,000cc 이하	410 원		3,000cc 초과	630 원	<p>제120조(신고납부) ①----- -----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 ----- ----- -----</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176조(세율) ①----- -----</p> <p>1. -----</p> <p style="margin-left: 20px;">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표 :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나.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 원</p> <p>2.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 -----</p> <p>1.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영 업 용</th> <th colspan="2" style="width: 80%;">비 영 업 용</th> </tr> <tr> <th style="width: 40%;">배 기 량</th> <th style="width: 40%;">씨씨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10 원</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70 원</td> </tr> </tbody> </table>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세액	(현행과 같음)	-----	-----	-----	-----	-----	-----	-----	-----	-----	-----	-----	310 원		-----	370 원
구 분	세 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세액																																																	
(생략)	800cc 이하	100 원																																																	
	1,000cc 이하	120 원																																																	
	1,500cc 이하	160 원																																																	
	2,000cc 이하	220 원																																																	
	2,500cc 이하	250 원																																																	
	3,000cc 이하	410 원																																																	
	3,000cc 초과	630 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세액																																																	
(현행과 같음)	-----	-----																																																	
	-----	-----																																																	
	-----	-----																																																	
	-----	-----																																																	
	-----	-----																																																	
	-----	310 원																																																	
	-----	370 원																																																	

번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 을 다음과 같이 한다.</p>		
		구 분	세 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